

무학회관 미용실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총칙)

- ① 본 사용허가 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제8919부대 내 1층 미용실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제8919부대를 "부대"라 하며, 사용허가자를 "사용인"이라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 ①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 * 토요일, 일요일 및 국가지정 공휴일은 휴일로 하되, 부대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휴일에는 사용인의 필요에 따라 영업할 수 있다.
- ② "사용인"은 무단휴업을 할 수 없으며, 개인사정으로 임시휴업이 필요할 시,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얻은 후 3일 이내로 임시휴업 할 수 있다.
- ③ "사용인"이 운영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부대 복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사용인"은 "부대"의 허가조건 및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사항 또는 허가조건 및 협약서 미 준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사용인"은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사용인" 부담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사용인"은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영업개시가 불가할 시 부대와 협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사용허가 시작일은 영업개시를 30일 이후로 하더라도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제3조(미용항목 및 가격)

- ① 미용항목은 육군규정 각 호의 범위 내 항목만 가능하며, 그 외 세부 항목

및 가격은 부대와의 상호 협약을 통하여 정해야 한다.

1. 군인은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2. 남성군인은 '간부표준형' 또는 '운동형'으로 한다.
 3. 여성군인의 머리는 길이와 머리 모양은 군모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사용인”은 항목,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사항에 대하여 “부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대” 및 “사용인”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운영협약서를 수정 및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미용 가격은 시중(인근 지역) 유사업종의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
- ④ “사용인”은 운영시간, 종류 및 가격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사용인”은 미용·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부대”측에 독점권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 및 조정) “사용인”은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조정을 “부대”에 요청할 수 없다.

제5조(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제한사항)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군부대 특수성에 의한 사용제한 사유 발생 시 허가시설 이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대”측에 사용료 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국가적 재난 선포, 전시예 준하는 사태 발생, 훈련·검열 등 시행
2. 대비태세 유지, 보안 등의 사유에 의한 야간 운영시간 통제

제6조(투자설비 등 처리) “사용인”은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취소 또는 철회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부대”가 인정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는 “부대”에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위생 및 안전관리)

- ① “사용인”은 부대 또는 행정관서의 위생·안전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위생 및 화재·가스 등의 안전과 관련한 “부대” 또는 관련 행정관서의 시정 요구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위생사고, 화재사고 등 사용인 측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사용인”은 사용허가서 발급 이전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비용의 부담)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위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한 공공요금을 점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허가시설 공용면적에 대한 청결유지 비용은 점유면적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조건 및 운영협약 위반 시 조치) “부대”는 “사용인”이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 ① 1차 위반 :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내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
- ② 2차 위반 : 1차 주의 조치 관련 내용 불이행 및 기타 위반내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
- ③ 3차 위반 : 사용허가 철회

제10조(종업원 관리) “사용인”이 미용실 운영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다.

제11조(허가기간의 갱신) “사용인”은 허가기간 갱신을 희망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부대”측으로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대”는 특수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사례,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용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의 책임) “사용인” 및 “사용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은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보안업무훈령」, 해당 부대 보안규정 및 기타 군사 보안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여론조사에 대한 조치) “부대”는 “사용인”의 영업과 관련된 항목의 판매가격 및 질, 서비스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가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을 조치 요구할 시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 ① “사용인”은 “사용인” 귀책사유로 이용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대”에서 제공한 건물, 설비, 비품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협약서 체결)

- ① “사용인”은 운영일, 운영시간 판매·서비스 품목 및 가격, 공공요금 징수 등에 대하여 “부대”와 별도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부대”와 “사용인”은 필요한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운영협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 ③ “사용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협약서 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대”는 사용허가를 철회하거나 “부대”가 합리적으로 정한 운영협약서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합의 등에 관한 사항)

- ① 특수조건에서 규정한 모든 협의 또는 합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청약 문서와 그에 대한 승낙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청약문서에 접수를 위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은 승낙의 뜻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의 또는 합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문서로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두 협의 또는 합의
 - 2. 부대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진 모든 업무 행위